

목 차

- 기 본 이 념
- 제 1장 총 칙
- 제 2장 회 원
- 제 3장 임 원
- 제 4장 회 계
- 제 5장 총 회
- 제 6장 상 별
- 제 7장 부 칙

기 본 이 념

주부 지방에 애니메이션 작품에 관련된 행사를 입안하고 실행하는 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중대한 사실을 우려해, 현 상황을 타파하고 더 많은 학생, 지역분께 친근감 있는 행사를 기획하고, 이를 통해 애니메이션, 게임 문화의 진흥을 도모하며, 또 행사의 운영을 통해 각 구성원의 사회적능력을 높여 사회에 공헌하는 인재의 육성을 달성하기 위해 본회를 결성한다.

제1장 총칙

(명칭)

제1조 본회는 정식명칭을 “나고야대학애니메이션연구회” 이라고 칭한다.

2 본회의 약칭은 “누-바” 라고 칭한다.

3 본회의 영어 정식 명칭은 “Nagoya University Voice Association” 이라고 칭한다.

4 본회의 영어 약식 명칭은 “NUVA” 라고 칭한다.

(명칭의 사용)

제2조 본회의 명칭은 원칙적으로 정식 명칭을 사용한다. 단, 홍보물에 사용하는 경우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목적)

제3조 본회는 애니메이션, 게임 등 관련된 산업진흥을 위해 각 회원의 교류, 교육 및 연구, 행사기획을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제4조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진행한다.

- ① 강연자를 초청한 강연회의 기안과 개최
- ② 비영리 행사 기획과 개최
- ③ 본회의 활동을 외부에 선전하는 활동
- ④ 본회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 동산, 부동산 등을 포함한 재산의 관리 업무
- ⑤ 관련 타 단체와 행사의 공동 개최
- ⑥ 회원 상호의 교류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
- ⑦ 물품의 판매 및 필요 물품의 구입

⑧ 전 각호의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 일체

(사업소 소재지)

제5조 본회의 사업소는 아이치현 나고야시에 둔다.

(공고방법)

제6조 본 회의 공고는 나고야대학 내에 설치된 본회의 공보간판 또는 홈페이지(이하 HP라 한다)에 제시되는 방법에 따라 진행된다.

(입회신청)

제7조 입회를 신청하는 자(이하 입회신청자라 한다)는 본회 소정의 입회용지에 필요사항을 기입해 회장 또는 회장이 지정한 회원(이하 회장 등이라고 하고 정관에 부속시킨다)에게 입회용지와 회비를 제출해야 한다.

(입회심사)

제8조 회장 등은 입회신청자에 대해 면접을 진행해 판단기준과 비교해 합격여부의 판정을 내린다.

2 회장 등은 입회신청자가 합격여부의 판정에서 합격인 경우, 입회허가를 입회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이때, 통지일을 회의 입회일로 한다.

3 회장 등은 입회신청자가 합격여부의 판정에서 불합격인 경우, 입회신청자에게 불합격이라는 것을 통지하고 회비를 반환해야만 한다.

4 찬조회원의 입회심사는 찬조회원 규칙에 따른다.

(판정기준)

제9조 전조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호 전부를 충족하는 경우를 합격이라 한다.

- ① 본회 및 우호단체에 있어서 불상사를 일으키거나 징계의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을 것
- ② 면접 시에 사회적인 소양이 결여된 언동을 하지 않았을 것
- ③ 일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일상회화 정도로 가능할 것
- ④ 신청 시에 본회 활동참가가 매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없을 것
- ⑤ 신청 시에 본회 활동경비의 지속적 부담이 가능할 것
- ⑥ 정관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고 계약했을 것

(퇴회)

제10조 퇴회를 희망하는 자(이하 퇴회희망자라 한다)는 회장 등에 퇴회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언제든지 퇴회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존업무를 종료한 후 그 기간이 경과하기까지 퇴회할 수 없다. 또, 복수의 기간지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중 장기에 따른다.

- ① 업무주임자, 각 위원장, 회계업무담당자 또는 기획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대행자를 선임하지 않고서는 기획진행 자체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자에 있어서는, 퇴회신청서를 제출한 날 이후에 담당하는 기획의 최종업무가 종료된 후, 후임담당자가 선임되고 업무에 관련된 관계서류, 연락문면 및 체제구축에 관련된 정보를 퇴회희망자가 완전히 이전하고, 이전한 것을 후임담당자가 회장 등에게 보고하는 날까지
- ② 부위원장, 직무명이 붙은 담당 또는 정회원에 있어서는 퇴회희망자가 퇴회신청서를 제출한 후 진행되는 각 위원회 및 위원의 선출에 있어서, 대리가 취임하고 업무에 관련된 관계서류, 연락문면 및 체제구축에 관련된 정보를 이전하는 날까지
- ③ 행사개최일이 결정된 경우에 있어, 퇴회희망자가 퇴회신청서를 제출한 날까지 그 행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 탈퇴표명이 개최일의 전후 2개월 이내인 때에는 행사의 개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업무에 관련된 관계서류, 연락문면 및 체제구축에 관한 정보를 이전하고, 후임담당자가 취임하는 날 중에 빠른 날까지

2 전항이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퇴회희망자는 퇴회를 완료한 날까지 새로 회비 등의 채무가 발생했을 때 또는 퇴회까지 지불하지 않는 채무가 있을 때에는, 퇴회일 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 이것을 변제하지 않으면 퇴회할 수 없다.

3 전 2항에 상관없이 회장은 다음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즉일처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본회는 퇴회자의 종전의 채무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① 사망,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장애 또는 후견의 개시

② 제명

4 본회는 회원이 그 자격을 소실해도 기납한 회비 외 거출된 금품, 물자는, 이것을 반환하지 않는다. (휴회)

제11조 회원은 소속된 위원회의 각 위원장에게 휴회신청서 및 회비를 제출해 휴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비는 휴회하는 회계연도분을 일괄로 납입해야 한다.

2 휴회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3 미납회비가 1년분을 넘기거나, 회비액이 휴회 중에 증액된 경우, 회원은 복귀 시 그 부족분을 지불한다.

4 휴회신청이 이루어진 날부터, 신청기간 내에 있어서는 회원의 의무를 유보한다.

5 휴회중인 회원은 각 위원장에게 신청해 휴회에서 복귀할 수 있다.

(회원자격의 상실)

제12조 징계가 결정된 경우, 회원은 회원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다.

2 회원이 회원구분을 전환해 종전의 회원자격을 소유하지 않게 된 경우, 이미 동일 년도에 있어 종전의 회비를 납입했고, 종전의 회비가 전환 후의 회비를 상회하는 경우, 회비를 납입하지 않는다.

제2장 회원

(회원구분)

제13조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찬조회원의 3가지로 하고, 정회원 및 준회원을 민법상(2017년 6월 2일 법률44호)의 조합원으로 한다.

(정회원)

제14조 정회원은 준회원으로서의 재적이력이 1년 4개월 이상의 성인인 자이면서, 동시에 연수의 성적이 우수한 자로부터 회장 등이 지정한다.

(준회원)

제15조 준회원은 입회심사에 합격하고 본회에 입회한 자로 한다.

(찬조회원)

제16조 찬조회원은 본회의 사업을 찬조하기 위해 찬조회에 입회한 자로 한다.

2 찬조회원의 규칙은 찬조회칙에 정한다.

(회원의 의무)

제17조 회원은 다음의 각호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① 교육연수예의 참가

② 집회예의 참가

③ 회비납입

④ 각 회원이 소속된 위원회의 회의예의 참가

⑤ 회원 상호의 원만한 연락

⑥ 회장이 정한 사항

2 전항에서 정하는 활동을 결석하는 경우, 사전에 결석한다는 것을 각 소속된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회원에게 연락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된 위원회의 위원장은 결석기간중의 활동에 있어서 회원의 의무를 보류할 수 있다. 단, 회비에 대해서는 보류할 수 없다.

(비밀유지의무)

제18조 회장 등은 기간과 내용의 범위를 정해 회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회원은 그 내용에 대해 외부에 발설해서는 안된다.

제3장 임원

(임원의 설치)

제19조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업무주임자 3명 이상 4명 이내

2 업무주임자 중 1명을 대표업무주임자로 하고, 대표업무주임자를 회장으로 한다.

(선임)

제20조 업무주임자는 보통총회의 결의에 의해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2 대표업무주임자는 업무주임자 중에서 업무주임자의 호선에 의해 정한다.

3 그 외 직책은 회장이 정한다.

(임기)

제21조 업무주임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재임도 무방하다.

2 제명 및 결원에 의해 보결로 선출된 업무주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사임 및 해임)

제22조 임원은 업무주임자에게 신청해, 현재의 직책을 사임할 수 있다.

2 업무주임자는 보통총회의 결의에 의해 해임할 수 있다.

(조직)

제23조 회장의 밑에 연수위원회, 공보위원회, 상임위원회를 둔다.

제4장 회계

(회계연도)

제24조 본회에 있어 1회계연도는 매월 1월 1일을 기산일로 하고, 다음으로 도래하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수지)

제25조 본회의 경비는 회비, 보조금,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2 본회의 예산은 매 연도별로 회장 등이 작성하고 회계연도의 집행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본회의 결산은 매 연도별로 회장 등 또는 회계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작성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회비)

제26조 정회원 및 준회원의 회비는 업무주임자 총회에서 결정한다. 단, 회계업무주임자는 회비의 납입방법에 대해 분납을 정할 수 있다.

제5장 총회

(총회종류)

제27조 총회는 보통총회와 업무주임자 총회의 두가지로 한다.

2 보통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에 의해 구성되고 의결권을 가진 총 회원의 2분의 1 이상이 출석하고, 그 과반수가 찬성하는 것에 의해 그 의사를 결정한다.

3 업무주임자 총회는 업무주임자에 의해 구성되고 업무주임자 전원이 찬성하는 것에 의해 그 의사를 결정한다.

(총회의사사항)

제28조 다음으로 열거하는 사항은 보통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 ① 예산 및 결산사항
- ② 회비사항
- ③ 정관의 개정 또는 폐지
- ④ 회의 해산, 청산 및 합병
- ⑤ 제명처분
- ⑥ 임원을 해임하는 처분
- ⑦ 개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사항
- ⑧ 회원전체에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2 전항 3호 및 4호가 정하는 사항에 관련된 의사는 보통총회에서 전 회원의 4분의 3이 출석하고 출석회원의 3분의 2의 승인을 거쳐야만 한다.

3 전항에 열거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통총회를 대신해 업무주임자 총회에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의결방법)

제29조 본회에 있어서 의결방법은 이의없음 방법(의장은 의사에 대해 이의가 없는지 회의 장소에서 출석회원에게 묻고 이의가 없는 경우 전원이 찬성하고 있다고 본다. 이의가 있다고 표명된 경우 투표 또는 거수로 찬반을 묻고 찬성수가 출석회원수의 과반수 이상일 때는 가결)으로 한다.

2 의결방법은 전자기기적 방법에 의해 진행할 수 있다.

3 의사를 열 때에는 각 위원장을 의장으로 한다. 단, 회장이 출석했을 때에는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4 의사의 출석자수가 정족수에 부족할 것이 예견될 때 또는 그 성질 상 특별다수일 것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의결권을 갖는 회원 중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자는 사전에 회장 등에 찬반서면을 제출할 수 있어 의사의 정족수 및 투표수에 가산한다. 이 경우 서면을 제출한 회원은 당일의 의사에 참가하고 투표할 수 없다.

제6장 상벌

(징계)

제30조 다음으로 열거하는 사항에 회원이 해당될 경우 회장은 회원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

- ① 회원이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 회원이 회장의 지시에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③ 회원이 과실에 의해 타자에게 상해를 준 경우
- ④ 회원이 연락 없이 회원의 의무를 복수회에 걸쳐 소홀히 한 경우

(징계의 종류)

제31조 징계의 종류는 계고, 근신, 제명의 세가지로 한다.

2 계고는 회원에 대해 회장 등이 면전에서 주의한다.

3 근신은 회원에 대해 회장 등이 문서로 회원자격의 범위와 그 기간을 지정해 정지하고 근신을 명한다.

4 제명은 회원에 대해 회장 등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고 회원에서 제명한다. 단, 제명을 하는 경우는 회원에 대해 자기 변호의 기회를 부여해 이에 입각해 제명을 의결해야만 한다.

제7장 부칙

(그 외 규약)

제32조 이 정관과는 별도로 회장은 업무수행을 위해 그 외 규약을 정한다.

(계보의 부속)

제33조 이 정관에 대표업무주임자, 회계업무담당자, 각 위원회 위원장의 계보를 부속시킨다.

(이 정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

제34조 이 정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2017년 6월 2일 법률44호)의 조함계약에 따른다.

(경과규정)

제35조 본회의 사무소가 설치될 때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회계업무담당자의 주소를 사무소의 주소로 한다.

2 제14조에서 말하는 정회원의 연한요건은, 2019년 9월 1일까지는 4개월로 바꿔 읽는 것으로 한다.

계보

대표업무주임자

제1대 鬼頭 昌宏 취임 2018년 3월 14일

회계업무담당자

제1대 岩田 知之 취임 2018년 3월 14일

상임위원회위원장

제1대 大杉 裕康 취임 2018년 8월 28일

연수위원회위원장

제1대 池田 真弥 취임 2018년 3월 14일

공보위원회위원장

제1대 平田 豊晴 취임 2018년 3월 14일

제7조에서의 회장이 지정한 자는 이하의 자로 한다.

상임위원회위원장, 연수위원회위원장, 공보위원회위원장